

2023. 2.

# 정관

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

# 정 관

제정	1997.4.15.
개정	1999.4.9.
개정	2000.3.17.
개정	2002.2.21.
개정	2003.2.21.
개정	2004.2.24.
개정	2006.2.16.
개정	2007.2.7.
개정	2011.2.23.
개정	2013.2.22.
개정	2014.2.20.
개정	2015.2.23.
개정	2016.2.23.
개정	2019.2.26.
개정	2023.2.22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” 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 2000.3.17.>

**제2조(소재지)**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
**제3조(목적)** 본회는 부산지역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예술수준을 향상시키고, 국제적으로 문화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문화산업시대에 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사업)**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06.2.16., 2016.2.23.>

1. 부산바다축제 및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및 새해맞이 시민의종 타종행사 <개정 2019.2.26.>
2. 부산불꽃축제
3. 국제교류문화행사

4. 기타 지역문화행사 등
5. 삭제 <2006.2.16.>
6. 연구, 컨설팅, 교육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삭제 <2002.2.21.>

**제6조(이익의 제공)** ①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함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6.2.16.>  
②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,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2장 회 원

**제7조(회원자격)**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<개정 2014.2.20.>

**제8조(회원의 권리)**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<개정 2014.2.20.>

**제9조(회원의 의무)**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 <개정 2014.2.20>

1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

② 연속 3회 이상 총회에 불참한 회원에 대하여 감사의 확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<신설 2014.2.20.>

**제10조(회원의 탈퇴)** 본회의 회원은 조직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<개정 2014.2.20.>

**제11조(회원의 상벌)**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·경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## 제3장 임 원

**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4.2.20.>

1. 조직위원장 : 1인
2. 부조직위원장 : 2인
3. 이사 : 10인 이상 25인 이내 (조직위원장, 부조직위원장 포함)
4. 감사 : 2인

**제13조(임원의 선임)** ① 조직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된다. 부산광역시장 궐위 시에는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이 조직위원장이 된다. <개정 1999.4.9., 2014.2.20., 2023.2.22.>

② 부조직위원장은 본회 집행위원장과 부산광역시 축제진흥 업무소관 담당국장이 되며, 당연직 이사를 겸한다. <개정 2003.2.21., 2004.2.24., 2006.2.16., 2011.2.23., 2014.2.20., 2015.2.23., 2019.2.26.>

③ 이사의 선출은 조직위원장의 추천으로 총회가 승인하고,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, 그 취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4.9., 2014.2.20.>

④ 선출직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. <개정 2013.2.22., 2014.2.20.>

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당해 연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2.22.>

**제14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22.>
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5. 임원이 사망하였거나 건강 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. 단,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임서를 조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임원의 선임제한)**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**제16조(임원의 임기)** ①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2.20., 2016.2.23.>

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17조(임원의 직무)** ① 조직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4.2.20.>
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<개정 2014.2.20.>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 <개정 1999.4.9., 2014.2.20.>
  -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,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는 일
  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- 5.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직위원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

**제18조(조직위원장의 직무대행)** 조직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는 부조직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4.2.20.>

[제목개정 2014.2.20.]

## 제4장 총 회

**제19조(구성)**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, 총회의 구성원은 제7조의 회원, 임원, 집행위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<개정 2016.2.23.>

**제20조(구분 및 소집)**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조직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4.2.20.>  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<개정 2014.2.20.>  
③ 총회의 소집은 조직위원장이 회의안전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, 회의개시 7일 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20.>

**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** ① 조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20.>
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- 2.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-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1999.4.9., 2014.2.20.>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22조(의결정족수)**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4.2.20.>  
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와 관련하여 당해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9.2.26.>

**제23조(총회의 기능)**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2.20.>

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재산의 처분·매도·증여·담보제공·대여·취득 및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의 승인 및 기타 중요사항

**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**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<개정 2014.2.20.>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에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
**제24조의2(총회 의사록)**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출석회원 2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고, 총회 의사록 공증촉탁은 총회에서 선출되어 기명날인한 출석회원 3인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5.2.23.]

## 제5장 이 사 회

**제25조(구성)**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2.20.>

**제26조(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.  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조직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1999.4.9., 2014.2.20.>  
③ 임시이사회는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조직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4.2.20.>  
④ 이사회의 소집은 조직위원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20.>

**제27조(이사회 소집에 특례)** ① 조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20.>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2.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1999.4.9., 2014.2.20.>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28조(서면의결)** ① 조직위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4.9., 2014.2.20.>

② 제1항의 서면 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조직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1999.4.9, 개정 2014.2.20.>

[제목개정 1999.4.9.]

**제29조(의결정족수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4.2.20., 2023.2.22.>

②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와 관련하여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삭제 <2014.2.20.>
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 <개정 2014.2.20.>

**제3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14.2.20.>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6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7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8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9. 조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10. 기타 중요사항

## 제6장 집행위원회 등

**제31조(집행위원회)**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(이하 “집행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0.3.17., 2004.2.24., 2014.2.20.>

[제목개정 2000.3.17., 2004.2.24.]

**제32조(집행위원회의 구성)**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부집행위원장 1인, 부산광역시 축제진흥 담당과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의 간사가 된다. <개정 2000.3.17., 2004.2.24., 2014.2.20., 2016.2.23., 2019.2.26.>

②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, 부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에 따라 취임한 집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00.3.17., 2004.2.24., 2014.2.20., 2016.2.23.>

③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. <개정 2000.3.17., 2004.2.24., 2014.2.20.>

④ 집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집행위원장은 이사회에 제명을 건의할 수 있다. <신설 2014.2.20.>

1. 본회의 취지에 어긋난 행동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2.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

[제목개정 2000.3.17., 2004.2.24.]

**제33조(집행위원회의 기능)**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한다. <개정 2000.3.17., 2004.2.24., 2014.2.20.>

1.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
2. 조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3. 본회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, 특수성·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실행위원회 구성여부 심의 및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4. 수의사업 및 기타 필요한 업무

[제목개정 2000.3.17., 2004.2.24.]

**제34조(집행위원회의 운영)** 집행위원회의 본회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00.3.17., 2004.2.24., 2014.2.20.>

[제목개정 2000.3.17., 2004.2.24.]

**제35조(실행위원회)** ① 전문성·특수성이 요구되는 본회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에서 구성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04.2.24., 2014.2.20.>

② 실행위원회는 실행위원장 1인, 부실행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후 사업이 종료되어 결과보고회 등 각종 서

류의 정산 등 행사와 관련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04.2.24., 2014.2.20.>

③ 실행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4.2.24., 2014.2.20.>

④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회 사업의 기획, 프로그래머 선정, 프로그램 심의 등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추진하며, 행사의 기획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 <개정 2004.2.24., 2014.2.20.>

[전문개정 2000.3.17.]

**제36조(자문위원회)** ① 본회 사업에 관하여 조직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2.20.>

② 자문위원회는 언론계, 교육계, 재계, 예술계, 사회단체 등 각계의 저명인사 중에서 조직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. <개정 2014.2.20.>

## 제7장 재산과 회계

**제37조(재산의 구분)**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기본재산의 처분)**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2.2.21.>

**제39조(수입금)**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수익 사업의 수익금, 기부금,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,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4.2.20., 2015.2.23.>

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 <개정 2019.2.26.>

**제40조(회계연도)**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41조(예산편성)** 본회의 세입·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**제42조(차입금)**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

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2.2.21., 2014.2.20.>

**제43조(결산)**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4조(회계감사)**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45조(임원의 보수)**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제8장 사무부서

**제46조(사무처)**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 <개정 2013.2.22.>

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3.2.22., 2014.2.20.>

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0.3.17., 2013.2.22., 2014.2.20., 2023.2.22.>

④ 사무처장은 집행위원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. <신설 2000.3.17., 개정 2013.2.22., 2014.2.20.>

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2.22., 2014.2.20.>

[제목개정 2013.2.22.]

## 제9장 보 칙

**제47조(해산)**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한다. <개정 1999.4.9.>

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산광역시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 <개정 1999.4.9., 2019.2.26.>

**제48조(정관개정)**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49조** 삭제 <2007.2.7.>

**제50조(규정제정)**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2.22.>

[제목개정 2023.2.22.]

부  
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정관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.

제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제4조(창립회원)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창립당시에 회원은 별지와 같다.

제5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## 제6조(정관개정)

- ① 1999년 4월 9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② 2000년 3월 17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③ 2002년 2월 21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④ 2003년 2월 21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⑤ 2004년 2월 24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⑥ 2006년 2월 16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⑦ 2007년 2월 7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⑧ 2011년 2월 23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⑨ 2013년 2월 22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⑩ 2014년 2월 20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⑪ 2015년 2월 23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⑫ 2015년 2월 23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⑬ 2019년 2월 26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
  - ⑭ 2023년 2월 23일 개정(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)